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단5437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조세형, 유태훈

원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C

소송대리인 D

피 고 1. E 주식회사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성재열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1.

20.까지 연 6%, 2019. 1. 21.부터 2021. 7. 23.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1/3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96,851원 및 그 중 33,631,000원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여행업, 여행상품 기획, 알선,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2018. 9. 11. 폐업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4. 24.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증내용 여행알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 보험기간 2017. 4. 24.부터 2018. 4. 23.까지, 인허가 조건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F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마.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계약자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계약자들이 지급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아니하여 계약자들은 ‘피해금액’란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순 번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지급내역	계약미행사유	피해금액
1	H협회	2017. 9. 20.	동유럽&발칸 9일 일정: 2017. 10. 25.부터 2017. 11. 2.까지	55,991,000원	피고 회사가 항공권을 구매하지 못함	23,991,000원 (32,000,000원 환불됨)
2	I	2018. 4. 10.	러시아 북유럽 탈린 6국 11박 12일 일정: 2018. 9. 27.부터 2018. 10. 8.까지	6,100,000원	2018. 9.경 피고 회사 폐업 및 연락두절	6,100,000원
3	J	2018. 4. 20.	코카서스3개국 10박 11일 일정: 2018. 9. 18.부터 2018. 9. 28일까지	2,740,000원	2018. 9.경 피고 회사 연락 두절	2,740,000원
4	K	2018. 4. 9.	러시아 북유럽 4개국 일정: 2018. 8. 25.부터 2018. 9. 6.까지	800,000원	2018. 7.경 계약자 계약취소	800,000원

바. C는 피고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여행피해신고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따라 위 계약자들은 C에게 합계 33,631,000원을 변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사. C는 201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2. 21. C에게 보험금 33,63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계약자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계약자들이 반환받지 못한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에게 해당 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고 회사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증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을 강제한 법령의 내용이나 입법취지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관광진흥법(2017. 11. 28. 법률 제1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①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

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여행보증금의 예치기간 내에 발생한 변상금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피해변상 신청)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피해변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되어 있는 업종 지역별협회장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금 청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여행자로부터 변상금 지불신청을 받은 업종 지역별협회장 광역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신청자 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업종 지역별협회장 광역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피해변상 신청 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 확인하고, 변상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 없이 피해여행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3조 제1항은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관 제1조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이하

‘인허가 조건’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내용이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여행업등록 및 기획여행실시 신고에 따른 영업보증금인 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여행업자가 여행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계약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 회사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행업자 등록 및 기획여행 실시를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관에서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 입은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함)를 그 보상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여행업자인 피고 회사가 여행 알선과 관련하여 계약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를 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보험사고 발생 여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피고 회사가 여행 알선과 관련하여 계약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를 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17. 4. 24.부터 2018. 4. 23.까지인 사실, 피고 회사가 2017. 9. 20. H협회와 위 순번 1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합계 55,991,000원을 지급받은 후 출발 예정일인 2017. 10. 25.이 도과하도록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기 지급받은 돈 중 32,000,000원만 반환한 사실, C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H협회에게 변상금 23,991,000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가 위 순번 1 여행계약을 불이행 한 것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이고, 23,991,000원(= 55,991,000원 - 32,000,000원)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순번 2 내지 5 여행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순번 2 내지 5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의 구상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1.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순번 1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 23,991,000원의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3,9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보험금 지급일부터 30일이 되는 2019. 1. 20.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6%, 2019. 1.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7. 23.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